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조사 및 정비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9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조사 및 정비	3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9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2. 19.

(3) 회 부 일 : 2026. 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실시 결과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가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제3항제2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조사 및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경우에는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

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
지 등 정비에 관한 계획안(이
하 “정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20조에 따른 사회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제출받은 정비계획안을 위
원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
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송
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3. (생략)

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비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

5. ~ 1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④ (생략)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2제6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¹⁾,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²⁾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정비하는 기능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1)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략)

-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2022년 전수조사를 통해, 6개 부처의 14개 사업군 80개 과제에 대한 통합관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년마다 사회보장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확정된 정비계획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 정책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층적으로 설계·운영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병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유사·중복 구조는 행정·관리 비용의 분산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 급여 수준 및 선정 기준 차이에 따른 정책 형평성 문제, 유사 사업 간 조정 부재로 인한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 및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조이므로, 동 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6기(2026.1.23.~2028.1.2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당연직(15)	위촉직(15)
국무총리(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교육부 장관(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부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법무부 장관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	수원대 사회복지학 교수
국가보훈부 장관	분당서울대학병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법률사무소 정립 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용산구 구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국무조정실장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비용 및 조사 부담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기존 제도와 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여 정합성이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범위의 조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필요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최초 전수조사 이후에는 수시조사 또는 필요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조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통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확정된 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정비계획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원 구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면 지방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영 의무를 반영 노력 의무로 완화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비계획안을 같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안은 관계 기관의 정책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6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95)

있는 문서임에도 이를 재량적으로 제한하여 공유하는 것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기회를 제한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비계획안은 그 성격상 관계 기관에 원칙적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중인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통합·폐지 등에 대한 정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보완적인 역할 관계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약화 우려 등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무국(보건복지부)은 ‘중앙정부는 보편적 표준급여,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앙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의 큰 틀 아래,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각 중앙부처의 전문성, 지자체의 자율성, 민주적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수요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중임.

그러나, 각 중앙부처의 제도가 국회 법률 및 예산 심의를 거쳐서 성립한 이후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입법부 각 상임위원회의 법률 제정권 및 예산 심의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아울러, 각 제도를 수행하는 전달체계 및 종사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시군구청장협의회)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사회보장체계의 합리화이지만,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는 ‘중복정비’를 통한 중앙통제와 집권의 제도화 측면이 강함.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유사한 제도 시행으로 중앙-지방간 심각한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였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

자치와 분권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 지자체 정책결정권과 예산권에 대한 침해,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구조조정 가능성, 지방복지의 다양성과 혁신성 위축, 지방참여 보장의 형식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개정안이므로 기초지방정부는 반대 입장임.

- (시도지사협의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별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기존 협의제도에 더하여 또 하나의 통제장치를 두는 것으로, 복지사무에 대한 이중규제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판단 기준이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복지사무의 자율적 수행 측면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497